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환경과-42633
등록일자	2014.12.1.
결재일자	2014.12.2.
공개구분	비공개(5,6)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안대현	김신희	이춘수	배경섭	전결 12/02 주윤중	
협조자	행정국장 재무과장 계약팀장	오병혁 김병희 엄선희			

『정온한 강남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 2015년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및 사업자 선정계획

- ▷ 사업내용 : 연중 무휴 소음민원등 처리
- ▷ 용역기간 : 2015.01.01 ~ 2015.12.31(365일, 12개월간)
- ▷ 추진일정
  - 2014.12.05 : 계약심사, 일상감사 . . . . . ( 재무과, 감사담당관 )
  - 2014.12.11 :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 . . . . ( 재무과 )
  - 2014.12.24 : 사업자 선정 . . . . . ( 재무과 )
  - 2014.12.26 : 계약체결 . . . . . ( 재무과 )
  - 2014.12.31 : 용역 착수 . . . . . ( 환경과 )
- ▷ 소요예산 : 166,497천원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자체발주)

2014. 12 . .

강 남 구  
( 환 경 과 )

『정온한 강남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및 사업자 선정계획**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2015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및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으뜸도시 강남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I. 운영계획

### ■ 운영근거

- **관련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 소음민원기동반운영계획(민간위탁사업, 방침제628호, 2001.06.26)

### ■ 운영경위

- 2001. 6 : 소음민원기동반 운영계획 수립(청장방침 민간위탁사업)
- 2002.11 : 소음민원기동반 근무시간 변경(주간 → 24시간)
- 2011.01 : 근무조 변경 (3개조→2개조, 용역단속인원:5명→4명),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변경(2011년)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

### ■ 운영현황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11월30일
처리건수	4,249건	4,575건	5,296건	5,245건	4,720건

## ■ '15년 운영계획

- 운영목적 : 소음·먼지 민원의 사전예방 및 발생시 신속처리
- 운영기간 : 2015.01.01 ~ 2015.12.31(365일, 12개월간)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무휴
- 운영절차



### ○ 주요역할

- ▶ 소음발생 사전예방(공사장, 영업장의 확성기·실외기, 기타 생활소음)
- ▶ 공사장 비산먼지 사전 예방 및 지도
- ▶ 민원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 소음최소화 및 재발방지 등

### ○ 인원구성 : 2개조(공무원 2명 및 민간용역 4명)

조 별	1조	2조	근무시간 외
담당자	공무원 1, 용역 1	공무원 1, 용역 1	야간·공휴일 1
관할지역	테헤란로 북측	테헤란로 남측	대체휴무 1
○ 용역직원 4명, 근무조 2개조 운영			

## ■ '15년 중점 운영사항

### ○ 민원 사전예방 기능 강화

- ▶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신고후 5일 이내 방문·점검
- ▶ 민원발생 사업장 조치 후 재발방지 예방순찰 실시

### ○ 소음원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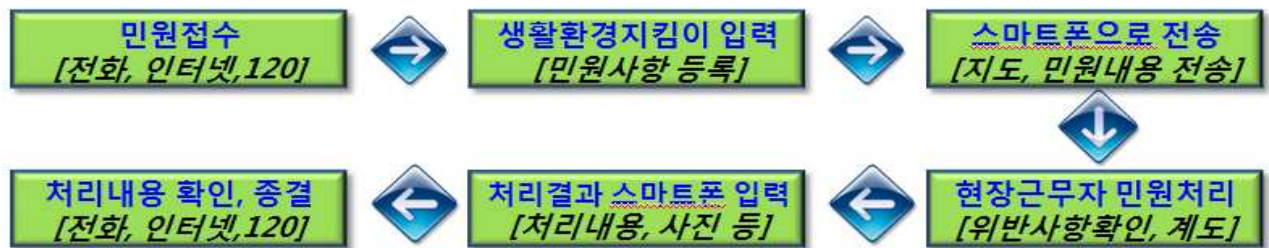
- ▶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 소음원 소음측정실시 => 규제기준 초과시 위반확인서 작성 =>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 ▶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 : 민원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 실시

## ○ 먼지 피해민원 예방

- ▶ 먼지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계도활동 전개
- ▶ 공사장 예방순찰을 통한 피해민원 사전 예방

## ○ 최단시간 신속·정확한 현장 민원처리

- ▶ IT와 PDA(4대) 접목 최단시간(실시간) 민원처리반 운영 원칙
- ▶ 생활환경지킴이 운영 : 민원접수 =>기동반 통보 => 현장민원처리
- ▶ 민원처리반 기동성 확보 : 기동차량 2대 운영
- ▶ 민원처리 프로세서



## ○ 소음민원기동반 식별표 부착

- ▶ 기동반 차량에 『강남구 소음민원기동반』 스티커 부착
- ▶ 기동반원 신분증 패용 등

## ○ 소음민원기동반 청렴·친절도, 투명성 확보

- ▶ 매월1회 이상 청렴·친절도 향상 교육 실시 및 청렴서약서 작성
- ▶ 금품, 편의등 비리발생시(즉시), 불친절신고시(3회 이상) =>용역원교체
-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 II. 사업자 선정계획

○ 사업명 :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 발주기관 : 강남구청 자체발주

○ 계약기간 : 2015.01.01 ~ 2015.12.31(365일, 12개월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

○ **참가자격**

- ▶ 용역사업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용역)업 등록 법인사업자로,
- ▶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용역에 대한 1건의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업체(실적으로 제한)

*※ 2011년도 제한경쟁 입찰결과 부적격 업체에 낙찰되어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 유지 목표*

### III.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66,497천원

○ **산출근거** : [붙임 1]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조

- ▶ 용역원가 : 인건비 111,474천원(73.6%), 경비 19,575천원(13%)
- ▶ 기 타 : 일반관리비 6,552천원(4.3%), 이윤 13,760천원(9.1%)

**※ 부가가치세 15,136천원 등**

○ 예산과목 : 환경과,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소음·분진·먼지관리,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 용역사업자 선금지급

▶ 지급액 : 계약후 50% 선금지급('15.2월중)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호 (2013.11.20)]

⇒ 단 선금지급은 구청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V. 추진일정

- 계약심사(재무과) ----- '14.12.05 ~ '14.12.10
- 용역사업자 계약의뢰(재무과) ----- '14.12.11
- 입찰공고 ----- '14.12.11 ~ '14.12.18
- 사업자 선정 ----- '14.12.18 ~ '14.12.26
- 계약체결 ----- '14.12.29
- 용역착수 ----- '14.12.30

※ '10년도 및 '11년도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적기에 용역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여 기존 계약자와 연장계약을 시행하였기에 '15도 계약은 긴급으로 발주하고자 함.

## V. 협조사항

- 계약심사, 용역사업자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 재 무 과
- 생활환경지킴이 시스템 운영(계속) ----- 전산정보과
-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차량(2대) 출입카드 발급 ----- 총 무 과
- 입찰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 ----- 민원여권과

- 붙임 : 1. 과업주문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용역계약서(특수조건) 1부.  
4.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소음민원용역사업에 관한 과업지시서

## 1. 용역사업의 개요

- 전 명 : 강남구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에 대한 용역사업자 선정
- 주관부서 : 강남구청 환경과
- 과업대상 : 소음·먼지예방 및 단속업무
- 계약기간 : 2015.01.01 ~ 2015.12.31까지(연중무휴 24시간, 휴무일 없음)
- 사업목적 : 날로 늘어나는 공사장 소음·먼지로부터 주민의 주거공간이 휴식과 충전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와 관계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용역사업의 업무범위 및 내용

- 업무범위 : 강남구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소음·먼지 예방 및 지도·단속
- 업무내용
  - 소음·먼지 발생 사전예방
  -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및 기록유지 등 단속업무 제반사항
  - 민원발생 예상 공사장의 반복 순찰 및 지도점검
  - 먼지(분진)발생 사진촬영 및 법규위반사항 확인기록 등
  - 기타 필요시 지시사항 등
- 수행방법 : 소음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공무원과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하여 공무원은 입회자가 되고 용역근무자가 주가 되어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민원접수시 현장에 출동하여 용역근무자가 소음측정기를 사용,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음정도를 측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단속등 민원처리(용역근무자가 차량운전 병행)

## 3. 용역사업 필요인력 및 장비

- 인 력 : 총 4인
- 장 비 : 기동차량 2대(주행거리 3만Km이내, 1,600cc급이하)



## 4. 용역사업의 수행방향

### ○ 지휘감독 체계

- 용역사업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를 문서 및 사진 등으로 유지·관리하고 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 강남구청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청사방호 경비 등 일시적인 타부서 협조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 수행인력 및 기술수준의 확보

- 용역사업자는 용역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고졸이상 학력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숙지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소음측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운전면허증(보통2종 기타) 소지자로 신체 건강한자 4명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소음민원 예방 및 단속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일반승용차 2대, 1,600cc급, 주행거리 3만Km 이내)을 투입하여야 하며,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용역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을 실제 투입하여야 하며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때는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미이행시 위약금 등 규정에 따라 조치)

### ○ 근무시간 등

- 평일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2개조 유지, 공무원 근무시간외 야간 및 일요일과 법정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교대로(1개조 유지)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 24시간 휴무를 하게 한다.

### ○ 근무방법 등

-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출근사역부에 날인하고 용역지시를 받은 후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사업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근무방법(메뉴얼)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용역근무자는 우리구의 지시하에 공사장 등의 소음측정 및 먼지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고 근무사항을 매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근무지역 변경조치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근무중 민원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과업수행 중 긴급상황 또는 그러한 징후 발견 시 신속히 담당부서장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여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 ○ 각종 사고의 책임 등

- 용역근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용역근무자 자신의 피해 및 타인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한다.

#### ○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

- 용역사업자는 성실한 용역사업수행에 따른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사업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규정 위반
  - 용역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수준에 미달하는 근무자 투입시 등
  - 기타 강남구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불응시 등

#### ○ 용역직원의 교체

- 과업지시서의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친절도 등의 사유로 용역직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2일 이내) 신규직원으로 교체한다.

#### ○ 용역사업 계약해지

- 특수조건 제11조 해지권 유보 참조
- 용역사업 불이행에 따른 용역사업 계약해지
  - 용역근무자가 이해관계인과 결탁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 ○ 기타 해석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14 - 호

# 용역사업자선정 입찰공고(안)

(강남구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강남구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2015년도 소음 민원기동반』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강 남 구 청 장

## 1. 용역사업의 업무 범위

2015년도 강남구 전지역에 대한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강남구청 직원과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 용역근무원이 주가 되고 공무원은 입회자가 되어 소음측정기를 사용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음정도를 측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단속 등 민원처리 및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과 먼지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 용역근무자가 차량운전 병행

## 2. 용역사업 필요인원 및 장비

가. 필요인원 : 총 4명

나. 장 비 : 승용차량 2대( 30,000km이내, 1600CC이하)

3. 용역기간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365일, 12개월간)

4. 용역비 : 166,497천원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6. 신청자격

가. 용역사업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비(용역) 사업자 등록된 법인사업자로서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최근 3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용역에 대한 1건의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업체

다. 서울시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

**7. 용역사업자 선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질의응답으로 대체

## **8. 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 **9. 용역계약의 조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10.10.26) 및 용역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 제34호(2013.11.20)] 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특수 조건(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용역계약)은 추가한다.

## **10. 용역근무자 임의교체 금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력을 실제 투입하여야 하며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때는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미이행시 위약금 등 규정에 따라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용역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특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다. 입찰결과 및 적격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 3423-6223)에 문의

#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용역 계약서(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사장 등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운영함에 위탁자인 강남구청장을 “갑”, 수탁자인 민간위탁용역업체를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강남구 관내의 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구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갖춘 민관합동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함에 있다.

## 제2조(관리업무의 범위)

- ① “을”이 “갑”과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소음발생 사전예방
  2. 민원발생예상 공사장 반복 순찰 및 지도점검
  3.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및 기록 유지 등 단속업무 제반사항
  4. 먼지발생 사진촬영 및 법규위반사항 확인기록 등
- ② 용역업무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그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계약기간)

- ① 용역업무의 계약기간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365일,12개월)로 한다.
- ② 계약기간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에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2016년도 계약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계약에 의한 업체가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도 금액산정 방법에 의한다

## 제4조(특수계약)

소음·먼지 관련 용역 업무에 대한 “갑”과 “을”의 특수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을”은 소음·먼지 용역근무자 4명에 대하여 “을”의 정규직원이라는 것을 착수 전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운전면허증(보통 2종 기타)소지자로 신체 건강한자 4명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소음민원 예방 및 단속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일반승용차 2대, 1,600cc이하, 주행거리 30,000km이내)을 투입하여야 하며,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기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용역근무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손해발생 시에는 “을”의 책임 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용역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근하여 출근사역부에 날인하고 용역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다.
5. 용역근무자는 함께 편성된 조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을 병행하여야 한다.
6. 용역근무자는 공사관계자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시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 및 지원요청을 하여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긴급사태를 해결하도록 한다.

### 제5조(운영방법 및 시간)

- ① “을”은 구청직원 등과 함께 편성된 다른 조원들과 권역별로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단속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및 토요일 : 09:00 ~ 18:00
  2. 단, 공무원근무시간 외(야간(토요일 포함), 새벽, 일·공휴일)에는 교대로 근무하여 1개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끝난 후 24시간 휴무를 하게 한다.
- ③ “을”은 계약기간중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등)

“을”은 소음분진 계도 및 단속실적을 당일 업무 종료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및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용역근무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행과 용모에 공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업무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용역근무자는 과업수행 중 주민 또는 공사관계자가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더라도 소극적 방어 이외의 대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용역근무자가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민,형사상 문제(사건)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 제8조(양도 · 양여 금지)

“을”은 소음분진에 관한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 양여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9조(지도감독)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을”에게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시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용역업무 이행사항 확인 감독
2.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를 지도
3. 소음분진예방 및 단속업무와 관련한 피해보상 민원처리 명령
4.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 제10조(교육 등)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사항이 있을 시 “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또는 서면통보로써 갈음한다.

1. 소음먼지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사항

## 제11조(해지권의 유보)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2. “갑”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소음민원기동반 해체로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5. “을”이 관계법령, 조례 및 본 계약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용역사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제12조(관계법령적용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제13조(계약서 작성 등)

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확인 및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계약자 갑”(위탁자)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인)

을”(수탁자) (주)민간용역업체 대 표 자 (인)